

〈書 評〉

崔鍾庫 著, 『北韓法』
(博英社, 1993)

金 日 秀*

I

분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곳이 북녘땅이다. 그곳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곳에도 법이 있는지를 우리들은 정말 까마득히 모른 채 오랫동안 지내왔다. 북한법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들에게 아주 먼 나라의 풍물 정도로 느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이랄까, 최근 수년간 북한법에 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 대학연구소 등에서 거의 도맡아 왔다. 북한법의 소재를 일반인이 손에 넣기가 쉽지 않고, 연구의 객관성과 국민정서와의 조율도 하나의 부담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을 통해 한 나라의 사정을 살핀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 나라의 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법이 아니라 불법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법보다는 당, 당의 정치권력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사회를 법이라는 좁은 창문을 통해 실상에 접근하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만큼 그 사회의 正體性和 변화를 소상하게 보여주는 자료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권력개편과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의 변화는 그때마다 법률의 개정을 가져왔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점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번에 서울대 법대 崔鍾庫교수가 펴낸 『북한법』은 가깝고도 먼 북한을 알려 주는 소상하고 진실한 자료를 담고 있어서 마음이 푸근해진다. 최교수는 이미 국내의 북한법연구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특히 북한법의 법사상적 배경에 관해 광복할만한 연구성과를 올려왔다. 특히 북한법을 한국법의 맥락속에 편입시켜 독자적인 제자리를 잡아놓은 것은 주목할만한 착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법의 범위상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양쪽 법률가들의 눈으로는 아무래도 제 실상을 드러내보이기가 어렵다. 우리의 헌법은 북한을 한반도의 일부로,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시각에서 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分權法인 셈인데, 이것도 승인과 상호의사소통에 의한 분권이 아니라 불법으로 세워진 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법의 위상정립은 북한법연구자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최교수의 이번 연구성과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를 체계적으로 무리없이 손질하였다. 아무리 분단상황이지만 우리는 한 언어, 한 민족, 한 핏줄을 달고 있는 한 형제요, 하나의 전통을 지붕으로 삼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법의 한 측면으로서의 북한법이란 개념이 결코 북한법의 존재를 허구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도구가 아니라, 북한법의 독자성을 손상시킴이 없이 하나의 전통적 지붕밑에 두 살림을 차린 분가족과도 같은 다정함과 친근감을 보여주는 사고도구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최교수는 북한법의 독자성을 사회주의법이라는 북한법 나름의 공유지대를 통해 설정하고 인정해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법권의 종주국은 舊소련이었다. 구소련의 해체이후 사회주의법권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유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특유의 변증론적 발전을 감행할 것인지, 아직 속단을 내리기는 이른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법의 잔재가 북한법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사회주의몰락과 쇠퇴과정 속에서 북한법은 주체사상이라는 버팀목을 잡고 독자적인 법발전과 변신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II

이 책은 이러한 변화들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관련법률을 함께 실고 있다.

헌법의 경우 1992년 4월 9일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최신의 법률도 소개해주고 있다.

이어서 행정법이라는 제목아래 중앙 행정기구, 지방행정기구들을 분석한 뒤 그 法源이 될 수 있는 조선로동당규약(1980·10·13)을 소개하고 있다. 이 규약을 보면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이 혼합되어 북한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킨다는 일념아래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진행한다는 강령이 엿보인다.

그 다음으로 민법이 소개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민법같이 긴요한 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법에서 민법은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공화국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재산소유 및 그 이전과 관련된 재산관계, 그리고 그와 밀접히 관련된 인격적 관계를 규정하며 소유권 채권 채무 저작권 창고고안권 상속권 등의 제도를 포괄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총칙편, 재산법편, 채무법편으로 편별되어 있고, 상속법은 종래 민법전 속에 있었으나 분리하여 가족법전 속에 독립된 법률로 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다.

북한의 가족법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5호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채택된 법률이다. 여기에 가족법의 기본, 결혼, 가정, 후견, 상속, 벌칙 등으로 편별해 놓고 있다.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내밀하고 일신전속적이고 사적인 우리 남한의 가족법체제와 비교해보면 흥미있는 차이점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는 또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근로자동맹규약이 있어 북한노동법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개인소유보다 국가소유, 협동조합소유가 사회의 기본체

제로 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창을 통해 북한 동포들의 삶의 희망과 애환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어서 최교수는 북한형법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개정사와 발전 전망을 신고 있다. 북한형법은 1950년 3월3일에 제정되었고, 1974년 12월 19일에 제1차 개정을, 1987년 2월 5일 제2차 개정을 했다. 북한형법은 정치형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개정은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변화의 솔직한 투영 외에 다르아니다. 제1차 형법개정에서 혁명의 정열로 이끌거리던 북한형법, 그래서 반혁명범죄에 대해서는 가치없는 응징과 제거의 원칙을 표명했던 북한형법이 제2차 개정형법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형법의 자리로 변모하게 된 것은 소련의 신사고와 개방정책의 영향을 반영하는 듯하다.

어쨌든 사회주의법 특유의 색채를 아직까지도 잃지 않고 있는 북한형법은 북한의 정치현실 법현실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사뭇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밖에도 북한의 민사소송법, 중재법, 형사소송법, 사회주의 노동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환경보호법, 상업법, 대외관계법, 도시경영법, 국제법 등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법이나 합영법 같은 귀에 익은 법률들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최교수는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법생활을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다. 북한의 법생활에서 나타나는 준법운동, 북한에서의 인권 등은 독자의 눈길이 한번쯤 머물다 지나가야 할 곳이다. 또한 북한의 전통법사관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법이 단순히 중주국 소련에서 직수입해온 법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속에서 계급적 갈등이론의 구체적 적용을 통해 독자적인 뿌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라고 판단된다.

III

북한이 사회주의法制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法史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재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그것은 한국法史學에 하나의 중요

한 과제를 던져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國史의 재해석에 대하여 남한보다 북한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그결과 朝鮮王朝實錄도 먼저 완역하였다고 알려져있다. 최교수도 지적하였듯이, 북한학자 윤국일이 쓴 「경국대전연구」(1986. 백과사전출판사)에서는 經濟六典을 국문으로 복원하여놓고 있다. 이것은 남한에서 田鳳德박사가 1989년에 『經濟六典拾遺』(아세아출판사)를 낸 것보다 앞서며, 한글화하였다는 점도 놀랄만하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 외에, 최교수는, 북한의 「법학사전」(1971)에 실린 전통법에 관한 항목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새로운 法史想을 소개하고 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조의 법제와 법사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남한에서는 經國大典에 대하여 “조선왕조의 사회조직과 행정제도와 법률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며,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제도와 관습속에서 성장하여온 것”(전봉덕)으로 찬양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리왕조의 봉건지배계급이 저들의 정치적 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리조시기에 확립된 통치기구와 법률제도의 기본을 립법화한 리조봉건국가의 반동적 기본법전”(법학사전 17면)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唯物史觀과 공산주의 세계관에 의한 평가에서 비롯되었지만, 남북한의 法史認識의 차이는 어쨌든 앞으로 한국法史學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IV

최교수의 북한법에 관한 기본시각은 “남한법과 북한법을 합쳐야 한국법”이라는 그의 표현에서 보듯이 한 法史學者, 法思想史家로서의 안목과 신념이 깃들여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가 이 책에서 북한법에 대하여 法學者로서의 평가와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안목에서 통일법을 열망하고 있는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확실히 북한법과 남한법은 異質化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적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극단적인 對照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법으로서의 동질성을 희망하고, 최

교수는 그러한 공통성이 엿보인다고 시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여 이러한 공통성이 무엇인지, 그 공통성이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세계만방의 이목 앞에서 심판받을 두려운 과제라고도 하겠다. 그래서 최교수는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민족이 이 과제를 잘 이루어낼 수 있다면 세계의 法文化史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갈망어린 전망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하여 「한민족대법전」의 편찬, 남북법률실무협회의의 역할등에 실천적 기대를 걸어 보기도 한다.

저자 최교수의 이러한 바람은 결코 개인적인 견해와 희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뜻에서 이번 최교수의 「북한법」출간은 그의 지금까지의 정력적인 법학저술에 한 地平을 넓힌 뜻 깊은 저작이라고 생각된다.